

국민권의 보호,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.



## 국민권익위원회



수신자   공직유관단체  
(경유)

제목   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협조요청

---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?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? 제82조, 제83조, 제89조에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 시 해임요구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3. 위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위반자에 대한 해임 및 고발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4. 이에 귀 기관에서는 내부 업무망에 공지하는 등 소속 공직자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1부.   끝.

##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
주무관 **조재훈** 서기관 **류춘열** 심사기획과장 전결01/11  
김세신

협조자

시행 심사기획과-75(2016.01.11.) 접수 감사실-172(2016.01.11.)

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( 국민권익위원회, 법제처) /

전화 044-200-7697 전송 044-200-7943 / cho0577@korea.kr / 공개